1. 5-06-0398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용 통합약정서(판매기업용)(상환청구권 없음) 개정대비표

현행	개정(안)	비고
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용 통합약정서(판매기업용) **(상환청구권이 없는 경우)**	**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용 통합약정서** **(판매기업용 – 상환청구권 없음)**	명칭 변경
융자상담 및 신청서 (생 략)	(삭 제) (삭 제)	업무편람 LB13 개정 에 따라 융자상담 및신청서 별도 징구
여신거래약정서(기업용) (생 략)	**여신거래약정서(기업용)** (좌 동)	
추가약정서(판매기업용) **(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용, 상환청구권이 없는 경우)**	**추가약정서(판매기업용)** (좌 동)	
제 1 조~제 8 조 (생 략)	**제 1 조~제 8 조** (좌 동)	
(신 설)	**제 9 조(기한연장 및 약정의 자동 해지)** ① 원 약정서의 여신기간 만료일은 은행 또는 본인 중 어느 일방의 서면에 의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자동연장되는 것으로 합니다. 이 경우 자동연장이라 함은 별도의 한도거래 기간연장용 추가약정서 등을 작성하지 않고 은행이 정한 최장기간(30 년)내에서 구매기업의 신청에 의해 구매기업과 은행이 정한 기한으로 자동연장되는 것을 말합니다. 다만,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자동연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1. 본인의 대출이 대출기일 현재 연체중인 경우 2. 본인에 대하여 신용정보관리규약상 신용도판단정보 및 공공정보가 등록된 경우	추가약정서(자동기한연장용)과의 통합에 따른 조항 신설

제 9 조(본 추가약정의 효력) (생 략) **추가약정서(자동기한연장용)** **(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용)** **외상매출채권 양도계약서(기업용)** **(포괄계약)** (생 략)	3. 구매기업으로부터 외상매출채권을 발행받은 마지막 날로부터 1 년 이상 경과하는 경우 ② 구매기업으로부터 외상매출채권을 발행받은 마지막 날로부터 2 년이상 외상매출채권을 발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말일자로 본 이용약정 및 여신약정은 별다른 통보없이 자동으로 해지될 수 있습니다. **제 10 조(본 추가약정의 효력)** (좌 동) (삭 제) **외상매출채권 양도계약서(기업용)** **(포괄계약)** (좌 동)	체하 추가약정서 제 9 조 편입으로 인한 삭제

2. 시행일 : 2015년 4월 30일

3.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개정약관의 적용 여부 : 시행일 이후 신규 약정고객부터 적용